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』 전부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감사담당관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일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(‘21.12.16. 타법개정)
및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
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다. 적극행정위원회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구성(안 제6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(안 제7조)
- 바. 위원의 임기(안 제8조)
- 사. 위원의 해촉(안 제9조)
- 아. 회의 등(안 제10조)
- 자.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등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2. 7. 28. ~ 8. 17. (20일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: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」

전부개정 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적극행정” 및 “소극행정”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.)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(구 본청 및 직속기관,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

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『지방공무원법』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·우대에 관한 사항
3. 적극행정 관련 교육·확산에 관한 사항
4.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(이하 “사전컨설팅”이라 한다)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소극행정 예방·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『지방공무원법』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

3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
4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성북구청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
5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으로 한다.

③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
3. 성북구청 소속 감사업무 부서의 장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

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0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(의견 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및 운영 등) 위원의 수당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3조(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)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」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

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
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감사담당관 정 표 근